

의안번호	2213771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 11. 25.
추계번호	25B577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실시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5억 4,000만원(연평균 21억 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안 제5조)	3,400	—	—	—	—	3,400	680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안 제17조)	1,428	1,428	1,428	1,428	1,428	7,140	1,428
계	4,828	1,428	1,428	1,428	1,428	10,540	2,108

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 및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계획수립·교육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수, 연구용역의 비용 및 교육 실시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노선 지정 및 시설기준)	시·도지사등은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함. 지정·고시된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금지·제한·전용구간의 지정)	일부 도로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구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경우, 시점부와 종점부에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를 통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제한 및 전용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9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시·도지사등은 제2항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허용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여야 함(제3항)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중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곳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차허용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는 안전표지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0조(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수단을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및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고정시킬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자가 손쉽게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시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정한 구역 또는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의 지정 또는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6	안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등)	시·도지사등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2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시·도지사등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대여하는 사업(이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3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수리센터 설치)	시·도지사등은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시·도지사등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협력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9	안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음(제5항)	
10	안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함(제1항) 1.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노선 현황,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량,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 설치 현황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현황 2.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수단 분담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현황 3. 각 지방자치단체별 등록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및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 현황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 주기·방법과 공표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 사업 등)	시·도지사등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12	안 제30조(보험 및 피해구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제2항) 1. 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2. 공공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마련 3.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률 지원 체계 구축	재량규정
13	안 제31조(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이하 “운전자격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4	안 제34조(이용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	○	유사사례 참고
2	안 제7조(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노선 지정 및 시설기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설치 지역, 구조 및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3	안 제8조(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금지·제한·전용구간의 지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도로구간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구간으로 지정·운영 시 시점부와 종점부에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제한 및 전용구간임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교통표지 및 노면표시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및 철도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9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허용구역에 안전표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안전표지,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충전시설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¹⁾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자전거 주차장수</th><th colspan="2">관련예산</th></tr><tr><th>총계</th><th>'24 신규설치</th><th>'24 유지보수</th><th>'24 신규설치</th></tr><tr><td>부산광역시</td><td>1,012</td><td>14</td><td>39</td><td>38</td></tr><tr><td>대구광역시</td><td>1,362</td><td>13</td><td>8</td><td>22</td></tr><tr><td>광주광역시</td><td>595</td><td>9</td><td>18</td><td>17</td></tr><tr><td>세종특별자치시</td><td>1,216</td><td>33</td><td>2</td><td>20</td></tr></table> 자료: 행정안전부	구분	자전거 주차장수		관련예산		총계	'24 신규설치	'24 유지보수	'24 신규설치	부산광역시	1,012	14	39	38	대구광역시	1,362	13	8	22	광주광역시	595	9	18	17	세종특별자치시	1,216	33	2	20
구분	자전거 주차장수		관련예산																													
	총계	'24 신규설치	'24 유지보수	'24 신규설치																												
부산광역시	1,012	14	39	38																												
대구광역시	1,362	13	8	22																												
광주광역시	595	9	18	17																												
세종특별자치시	1,216	33	2	20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5	안 제10조(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시설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내에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²⁾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내에 자전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수</th><th colspan="2">관련예산</th></tr><tr><th>총계</th><th>'24 신규설치</th><th>'24 유지보수</th><th>'24 신규설치</th></tr><tr><td>부산광역시</td><td>615</td><td>41</td><td>19</td><td>3</td></tr><tr><td>대구광역시</td><td>39</td><td>－</td><td>－</td><td>－</td></tr></table> 자료: 행정안전부	구분	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수		관련예산		총계	'24 신규설치	'24 유지보수	'24 신규설치	부산광역시	615	41	19	3	대구광역시	39	－	－	－
구분	대중교통수단 내 자전거 거치대 수		관련예산																			
	총계	'24 신규설치	'24 유지보수	'24 신규설치																		
부산광역시	615	41	19	3																		
대구광역시	39	－	－	－																		
6	안 제11조(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2조(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취약지역의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 운영 예정 지방자치단체의 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형 이동수단 보유 규모, 사용료 수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³⁾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구분</th><th>초기구축비용</th><th>'24 유지보수예산</th></tr><tr><td>서울특별시</td><td>2,800</td><td>32,450</td></tr><tr><td>부산광역시 기장군</td><td>307</td><td>311</td></tr><tr><td>광주광역시</td><td>895</td><td>178</td></tr><tr><td>세종특별자치시</td><td>1,840</td><td>2,567</td></tr></table> 자료: 행정안전부	구분	초기구축비용	'24 유지보수예산	서울특별시	2,800	32,450	부산광역시 기장군	307	311	광주광역시	895	178	세종특별자치시	1,840	2,567
구분	초기구축비용	'24 유지보수예산																
서울특별시	2,800	32,450																
부산광역시 기장군	307	311																
광주광역시	895	178																
세종특별자치시	1,840	2,567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3조(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시설·수리센터 설치)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개인형 이동수단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충전시설 및 수리센터의 필요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유사 입법 사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제13조의2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 수리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예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개소,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자전거 수리센터</th><th colspan="2">관련예산</th></tr><tr><th>총계</th><th>'24 신규설치</th><th>'24 유지보수</th><th>'24 신규설치</th></tr><tr><td>부산광역시</td><td>2</td><td>1</td><td colspan="2">46</td></tr><tr><td>대구광역시</td><td>7</td><td>－</td><td>144</td><td>－</td></tr><tr><td>광주광역시</td><td>10</td><td>2</td><td>174</td><td>51</td></tr></table> 자료: 행정안전부	구분	자전거 수리센터		관련예산		총계	'24 신규설치	'24 유지보수	'24 신규설치	부산광역시	2	1	46		대구광역시	7	－	144	－	광주광역시	10	2	174	51
구분	자전거 수리센터		관련예산																								
	총계	'24 신규설치	'24 유지보수	'24 신규설치																							
부산광역시	2	1	46																								
대구광역시	7	－	144	－																							
광주광역시	10	2	174	51																							
9	안 제17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	유사사례 참고																								
10	안 제18조(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의 작성·공표)	－	미대상 － 유사 입법 사례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⁵⁾을 참고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례 취합 후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어 소액의 인쇄비 외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도 추가재정소요 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통계를 작성·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19조(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보급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12	안 제30조(보험 및 피해구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피해구제기금의 설치·운영, 공공보험 또는 보상제도의 마련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해당 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피해구제기금의 규모 및 운영 방식, 공공보험·보상제도의 내용 및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13	안 제31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알 수 없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34조(이용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제정·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공영자전거 대여사업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국토교통부의 자체 인력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 보호 교육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안 제17조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계기간 중 첫 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시·군·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자체인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시·도지사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 안 제17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안 제5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를 참고하면, 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4억원(연평균 6억 8,000만원)으로 추계
 - 최근 시·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면 연구용역 단가는 2억원
 - 제정안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첫해인 2027년에 17개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비용을 집행하는 것으로 가정
 - 시·군·구청장의 경우 시·도지사가 수립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토대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의 연구용역 없이 자체인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최근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도	금액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2023	190
경상북도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23	200
부산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4-2028) 수립 용역	2023	200
충청북도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22	195
평균			196

주: 금액은 나라장터 건별 사업금액(추정가격+부가세) 기준임

자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

[표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3,400	-	-	-	-	3,400	680

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 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수 및 연구용역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등(안 제17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제정안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71억 4,000만원(연평균 14억 2,800만원)으로 추계
 - 최근 시·도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사업 단가는 연 8,400만원 수준
 - 17개 시·도지사가 매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최근 시·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내용	기간	금액
서울특별시	시민 대상자별 맞춤형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 - 자전거 교통안전 시민교육(자전거 교통법규, 통행 방법, 안전 수칙, 이용 예절, 기기 관리 방법 주행 실습 등) - 교육인원: 86,676명 - 수강료: 무료	2024.3월~12월	98
대구광역시	상리자전거 교통안전교육 - 6개과정(자전거 정비교육, 초급반, 건강반, 초등학생반, 어린이반, 어르신반) - 수강료: 건강반(2만원), 초급반(1만원) - 교육인원: 1,541명	2024.1월~12월	100
광주광역시	자치구별 주민 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 - 자전거 안전교육 및 주행 실습 - 교육인원: 1,463명	2024.1월~12월	54
평균			8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	1,428	1,428	1,428	1,428	1,428	7,140	1,428

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교육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수, 교육의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사례 및 자전거 타기 교육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계획수립·교육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수, 연구용역의 비용 및 교육 실시 방법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제정안 중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